



IFRS 적용실무 해설 (11)

이 자료는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의 각 주제별 담당자들이 해당 이슈별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며, 향후 2~3년 간 IFRS 도입시점까지 이슈를 주제별로 소개할 계획이다. <편집자 註>

1. IFRIC 18 고객으로부터의 자산 이전 (Transfer of assets from customers)

전기 및 수도 등 공공사업의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가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이전 받고 동 자산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가 다수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통일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상이한 회계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IFRIC)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해석서인 IFRIC 18을 발표하였다. 해석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동 해석서는 고객이 회사에 유형자산을 이전하고 회사는 동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고객을 공공사업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주거나, 동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경우, 자산을 이전 받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개발업자가 본인이 건설한 주택단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변전소를 건설하여 전력공급회사에 이전을 하는 경우나, IT용역을 제공

받는 회사가 IT 장비를 구입하여 IT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이전하고, 동 장비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IT용역을 공정가치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경우 등이 본 해석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

본 해석서는 IAS 20 정부보조금과 IFRIC 12 민간투자사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되는 자산이 무형자산이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상대와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해석서를 유추적용 할 수도 있음을 결론도출 근거에서 기술하고 있다.

자산성의 검토

본 해석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고객이 회사에 이전한 자산이 자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이다.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요건은 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소유권이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의 측정

고객이 이전한 자산이 상기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 동 자산은 이

전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수익인식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이전 받고 이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IAS 18에서 규정하는 이중 자산간의 교환 거래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산과 교환되는 용역이 식별 가능한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한 주택단지 전력공급회사의 경우, 변전소를 이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거주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전기료가 자산을 이전하지 않은 거주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전기료와 동일하다면 용역(전기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은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공받은 변전소를 통하여 주택에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만이 식별되는 용역이며, 동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시점에 자산의 이전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만약, 위의 예시에서 변전소를 이전한 주택단지에 공급하는 전기료가 다른 곳에 공급하는 전기료보다 저렴하다면, 이 경우 식별되는 용역은 두 가지-네트워크 연결과 전기공급-이며, 이전 받은 자산의 대가를 각각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안분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연결과 관련한 수익은 네트워크 연결 시점에, 전기공급과 관련한 수익은 약정기간(용역제공 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내용연수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현금을 이전 받는 경우

고객에게서 현금을 이전 받아 자산을 건설 또는 취득하고 동 자산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서를 적용한다. 단, 이 때 인식

되는 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본 해석서의 제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공공사업 시행자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에 통신산업 등 타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이전 받고, 동 자산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 구조를 갖는 산업에서는 본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현행 회계처리의 변동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해석서는 200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유승경 회계사

2.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후속적 회계처리

최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이 개정되면서 재평가모형이 도입되었다. 동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평가모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평가모형의 차이에 대해 다음의 사례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업 A는 2008년 1월 1일에 건물을 100억원에 취득, 잔존가액 0원으로 하여 10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동 건물이 속하는 분류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였다. 2008년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동 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35억원과 50억원이다. 2008년과 2009년 동 유형자산과 관련된 후속적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16호 문단 41에 따르면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회사의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즉, (1)그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 전체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거나, (2)감가상각으로 자산이 사용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기준서 제1016호 문단 35에서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에 대해서도 다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또는 (2)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기업 A가 모두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자산이 사용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 및 재평가시점에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먼저 제거하는 방식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다면 각 연도별 해당항목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될 것이다.

	2008년	2009년
감가상각 전 장부금액	100	135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	-
당기 감가상각	10 (=100/10)	15 (=135/9)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0	15
기말 장부금액	90	120
재평가액	135	50
재평가증감액	45	-70
재평가잉여금(자본)	45	-40 (=45-45/9)
재평가손실(손익)	-	-30 (=70-40)

이와 달리 기업 A가 모두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 재평가잉여금 전체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및 재평가시점에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다면 각 연도별 해당항목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될 것이다.

	2008년	2009년
감가상각 전 장부금액	100	150(=100*135/90)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	15 (=10*135/90)
당기 감가상각	10 (=100/10)	15 (=135/9)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0	30
장부금액	90	120
재평가액	135	50
재평가증감액	45	-70
재평가잉여금(자본)	45	-45
재평가손실(손익)	-	-25 (=70-45)

반면,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서는 상기와 같은 회계정책의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 즉, 문단 25의7에 의하면 재평가시점의 유형자산 장부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단 25의12에 의하면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채택국제기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수미 이사

3. 부채 및 자본의 분류 - 풋가능금융상품 (puttable instrument)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 A사는 상환가능하고 참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증권의 보유자들은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puttable), 청산할 경우는 A사는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A사는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단락 11)

풋가능금융상품이란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풋가능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그 보유자가 환매를 요구할 경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을 것이므로 위 내용에 따르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기준서 제1032호 단락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의해서 그 분류를 결정할 경우 풋가능금융상품은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금융상품도 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8년 2월에 특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 조건을 만족하는 풋가능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서(제1032호 및 1001호)를 개정하였다. 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한 특정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조건들의 기본전제는 풋가능요소(puttable feature)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특성상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다. (단락 16A(1))
-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된다. (단락 16A(2))
-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단락 16A(3))
- 위 계약상 의무 외에는 기타 다른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락 16A(4))

-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기대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그 금융상품 존속기간 중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등에 기초한다. (단락 16A(5))

풋가능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그 밖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단락 16B)

- 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또는 인식된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등에 기초한다.
-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잔여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A사는 청산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풋가능금융상품만을 발행하였으므로 가장 후순위라고 볼 수 있고(16A(1), (2)), 이러한 풋가능금융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동질적인 권리를 가질 것이다.(16A(3)) 또한, 환매요청 및 청산시 상환의무 외의 다른 계약상 의무는 없으며(16A(4)), 기대현금흐름은 펀드의 순자산 변동에 기초한다.(16A(5)) 마지막으로 A사는 풋가능금융상품 외의 다른 계약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16B의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가 발행한 풋가능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신탁자산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에서는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 발행한 풋가능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은 자본으로 분류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준서 제1032호 단락 11의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것이지만, 2008년 2월 개정에 따라 나열된 조건(단락16A,B)을 모두 충족하므로 자본으로 분류된다. 풋가능금융상품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에서의 기본입장(금융부채 및 자본의 정의)은 계약상 현금 등 금융자산의 상환의무라는 점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회계처리를 허용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요건을 충족하여 잔여지분이라는 실질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금

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비지배지분은 연결관점에서는 잔여지분이 아닐 것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

(*) 2008년 2월 개정된 내용은 '풋가능금융상품' 및 '청산되는 경우에만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자본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이 중 풋가능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을 고려하고 있다. [M]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수완 회계사

시 사 경 제 용 어

어닝 서프라이즈 [Earnings Surprise]

증권사 연구원들은 향후 장세가 어지럽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한 종목을 선취매하는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한다. 요즘처럼 경기가 악화됐을 때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려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거나, 불황을 타지 않는 업종에 속해 있어야 한다. (2009. 2. 15, 이데일리)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는 어닝시즌에 발표된 실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깜짝 실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닝시즌이란 본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를 말하며, 최근엔 국내 증시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기를 어닝시즌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업별 주가가 많이 움직이게 된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인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실적이 중시되어 주가의 움직임이 더욱 커진다.